

[동업관계분쟁] 2명의 수산물 가공판매업 동업관계, 동업자 1인이 판매대금 중 일부의 개

인채무변제에 임의 사용 혐의 - 횡령죄 부정: 인천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고단

85 판결



2. 관련법리

횡령죄에 있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도 어디까지나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자신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없어졌는데도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일응 피고인이 이를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피고인이 그 위탁받은 돈을 일단 타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그 위탁받은 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도8356 판결 등 참조).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공소장 - 제품 판매 대금을 동업자 중 1인의 통장에 보관하던 중 개인채무변제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음

(2) 동업자 피고인 주장 - 개인채무변제에 임의 사용한 사실 없음

(3) 쟁점 - 임의사용 사실 입증 여부

판결요지 - 횡령 불인정, 개인채무변제 임의사용 사실 입증 불충분

2012. 3. 16. 견해삼 판매대금 1,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같은 날 H에게 700만 원을 송금하였는바, 이로써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위 J, K, H으로부터 차용한 키조개 구매 보증금 상당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돈을 J, K, H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어 보면 피고인이 견해삼 운임 및 경비로 M에게 149만 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돈을 M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피고인이 2012. 2. 1. 연안부두에서 견해삼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1,500만 원을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먼저 동업 채무를 갚으라'고 한 적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까지도 이 사건 견해삼 가공 판매 사업 당시 고용한 P의 노임도 지급하지 못한 상태이며, 위 C 명의의 D은행 계좌는 투자금이나 판매대금을 받거나 동업자금을 집행하는 계좌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2. 3. 13.경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1,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개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첨부: 인천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고단85 판결

동업법무, 동업분쟁, 조합청산, 기업법무, 계약분쟁, 손해배상, Claim, License, R&D 제휴계약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